

국명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포르투갈	1,803	996	1,432	753	1,829	937	1,301	778	683	424	-47.5	-45.5
독일	3,229	1,974	2,344	1,257	2,630	1,387	2,470	1,533	2,202	1,262	-10.8	-17.6
프랑스	4	19	2	5	1	2	5	10	-	-	-	-
네덜란드	2,985	741	2,592	575	2,420	459	2,217	419	2,464	468	11.1	11.8
영국	419	184	154	49	151	51	73	17	167	74	129.2	334.8
덴마크	694	401	426	191	656	360	488	306	316	168	-35.2	-45.1
노르웨이	840	481	956	517	631	335	1,225	764	1,233	780	0.6	2.1
아이슬란드	5,038	3,196	6,106	3,271	6,753	3,702	5,321	3,203	3,655	2,236	-31.3	-30.2
파키스탄	40	12	55	15	13	4	5	1	1	0	-80.3	-78.5
미얀마	2	1	1	0.3	-	-	-	-	-	-	-	-
인도네시아	0.4	0.2	-	-	-	-	-	-	-	-	-	-
태국	-	-	-	-	-	-	2	1	-	-	-	-
베트남	13	5	14	5	11	4	9	3	11	4	16.9	30.5
중국	680	207	521	129	587	139	251	65	192	52	-23.6	-20.5
한국	42	25	54	30	14	8	27	15	26	19	-4.9	22.8

자료 : 일본 무역통계

06 통관 및 수입제도

가 수산물 수입절차

- 수산물 관세분류는 대략 HS 제3류에 속하지만, 조제품(16류)나 가공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됨
- 수산물은 식품관계의 규제 이외에 일부 수입허가(할당·승인·확인)을 필요로 하는 품목이 있음



나 수산물 수입통관 관련 법령

1) 식품위생법

-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동 법의 규제를 받지만, 먼저 후생성 고시 제 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
(참고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 이 가운데 식품 일반의 규격기준을 더하여 수산물 및 동 가공품 관계에서는 아래의 품목에 각각 식품별규격(성분규격, 제조·보존기준 등)의 규정이 있음

a. 고래고기제품, b. 어육반죽제품, c. 연어알/연어 알젓/명란젓, d. 자숙문어,
e. 삶은 게, f. 생식용 신선어패류, g. 생식용 굴, h. 냉동식품

- 또한, 동 규격기준에는 잔류농약(포지티브리스트에 없는 농약의 허용량은 0.01ppm이하)과 식품첨가물 등의 함유에 관한 규정이 있음
- 과거의 위반사례로서 중국산 갯장어(트리플라린/Trifluralin), 중국산 남동참게(프라졸리돈/furazolidone), 한국산 재첩(엔드스루핀), 캐나다산 랍스터(마비성패독) 등으로 수입 신고시 전 롯데에 대해 검사명령(제26조 3항)이 실시된 적이 있음
- 판매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시담당에 「식품등 수입신고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필요가 있음. 심사단계에서 규격기준이나 안전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실시되어, 심사검사에 의해 동 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필증이 나오므로 세관에의 수입신청시에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는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 생식용 신선어패류에 대해서는 동 법에 의거한 성분규격 및 가공보존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됨. 식품첨가물 및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질의 함유에도 주의를 요함.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발색제, 착색료, 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음. 판매표시에 대해서 고등어는 알레르기물질 표시제도에 있어서 표시권장 품목으로 지정되어져 있어 이를 포함한 가공식품에는 적절한 표시가 권장되고 있음. 게다가 판매시에는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한 식품표시제도 대상품목도 있어 주의를 요함

a. 특정원재료(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 : 새우, 게
b. 준 특정원재료(표시가 장려되고 있는 것) : 전복, 오징어, 연어알, 연어, 고등어

2)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국내 판매시에는 동 법에 의거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행할 필요가 있음. 수입품에는 원산지(국) 표시가 의무되어 있음. 신선품이라면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 가공품이면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더욱이 수산물의 경우는 「수산물 품질표시기준」이 적용됨
- 이 외에도 통조림, 병조림, 어육반죽제품 등의 개별품질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수산가공품이 있음

a. 성계가공품, b. 성계무침, c. 건미역, d. 염장미역, e. 가다랑어포, f. 마른멸치류, g. 장어가공품

- 가다랑어포나 장어가공품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원료원산지표시 의무가 요구되고 있는 품질표시기준도 있음. 또한, JAS규격(임의)이 있는 것은 수산물 통조림 및 병조림 외에 가다랑어포와 마른멸치류가 되어 있으며, 적합승인을 받으면 JAS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수입품에는 원산지(국) 표시가 의무되어 있지만, 개정JAS법(평성21년5월)에서 식품의 산지위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설정되어 있음

3)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국법) / 수입무역관리령

수산물 가운데는 동 법령에 의거 규제를 받은 품목이 있음. 또한 외국법상의 북한에 관한 대응조치(2006년 4월부터)는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으로 하는 모든 화물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음

가) 수입할당품목(IQ품목)

- 수입할당(IQ)품목의 수입할 때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농수산실)에 수입할당을 신청하고 할당증명서의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수입무역관리령에 의거한 수입할당을 받는 것으로서 공표된 품목 중 수산물 관계는 수입공표 1의 제1 과 같음. 이들은 품목마다 원칙적으로 1회 수입발표(신청절차 등의 발표)가 행해지며, 수입승인을 취득한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 대상 수산물 ■

- a. 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꽁치 : HS 0301.99-2(살아있는 것), 0302(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3(냉동한 것), 0304(필렛 기타 어육/신선냉장냉동), 0305(건조/염장/염수절임, 어분, 명란젓, 마른멸치)
- b. 가리비, 조개관자, 오징어(몽고오징어 제외) : HS 0307
- c. 김(마른김, 무당조미김, 기타 김 조제품), 다시마, 동 조제품, 기타 식용해초 : HS1212.21-1, 1212.21-2, 1212.21-3, 2106.90-2(2)(아마노리속, 아오노리속, 히토에구사속, 토로로콘부속, 콘부속)

■ 각 품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할당방법은 아래의 4가지가 있음

a. 상사할당(실적할당), b.어업자할당, c. 수요자할당, d. 선착순할당

- 신규로 이들 품목을 수입할 경우는 d에 의한 할당을 취득하는가, b, c의 할당을 받은 자로부터 발주가 필요조건이 됨
- 수입할당발표는 경제산업성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며, 신청자격, 할당수량, 신청기일, 원산지(리스트에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수 없음) 등이 표시됨
- 수입할당이 없는 화물을 반입하더라도 수입통관할 수 없음. 수입할당 취득후에 할당 수량을 한도로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이 승인된 후에 화물 수입 통관이 가능함

나) 2호 승인품목

- 수입공표의 2의 표 제1에 열거한 지역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으로 하는 특정 화물을 수입할 경우,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경제산업성에 의한 수입승인(2호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함

■ 대상 수산물 ■

- a. 고래, 동 조제품
- b. 참다랑어(대서양 또는 지중해에서 축양된 신선·냉장의 것)
- c. 남방다랑어(신선·냉장의 것, 일부 원산지 제외)
- d. 눈다랑어, 동 조제품(일부 원산지)
- e. 연어/송어, 동 조제품
- f. 일본 구역에 속하지 않는 해면을 선적지역으로 하는 바다포유동물 및 그 조제품, 생선, 갑각류 기타 수서동물 및 이들 조제품,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의 동물성 생산품, 해초 및 그 조제품

다) 사전확인품목

- 수입공표 3에서 정한 대상품목을 수입할 경우,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경제산업성에 의한 확인서 교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함

| 대상 수산물 |

- a. 냉동의 참다랑어, 남방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
- b. 참치(날개다랑어, 참다랑어, 남방다랑어, 눈다랑어를 제외), 청새치(황새치를 제외)를 선박에 의해 수입할 경우(신선·냉장·냉동의 것)
- c. 메로

라) 통관 시 확인품목

- 수입공표 3에서 정한 대상품목을 수입할 경우, 통관시에 통계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해 세관에 의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대상 수산물 |

- a. 참다랑어(신선·냉장), b. 남방다랑어(신선·냉장), c. 황새치(신선·냉장)

마) 위생토조약(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1) 식품위생법 관계

- 판매를 목적으로 한 청어를 수입할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시 담당에 『식품등수입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됨. 검역소에서 심사 및 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청서에 『신청완료』라는 도장을 받음. 또한, 수출된 지역에 따라서는 콜레라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음. 또한, 이러한 어패류가공품을 용기포장에 넣어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어패류에는 알레르기 물질을 함유된 것도 있어 본항 중 고등어는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2)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동법에 의거 판매시에는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됨. 이 중에서 수입품에는 원산국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3) 수입통관 관계

- 『수입(납세)신고서』에 위에서 취득한 『신청확인 완료 식품등수입신청서』, 인보이스, B/L, 보험증명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함. 세관에서는 심사, 검사 및 납세 후, 수입허가서를 교부함

07 한국산 유통동향 및 경쟁국동향

가 경쟁국동향

1) 중국산

- 중국산 활 넙치류(가자미류 포함)의 수입량은 매년 감소를 보이며 2009년 800톤으로 전년비 50% 감소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10년부터는 수입이 중단되었음. 신선, 냉장, 냉동 또한 매년 감소의 폭이 커지고 있으며 2012년은 5년전인 2008년에 비해 3배 가까이 감소한 192톤을 기록하였음. 이는 2007년 이후 모니터링 검사에서 중국산 양식넙치에서 AOZ0.017ppm(기준:불검출)이 검출되어 중국산넙치 및 그 가공품(간이 가공한 것에 한함)의 모니터링 검사 강화와 2008년 중국산 냉동만두사건 및 각종 수산물(뱀장어 등)의 산지위장사건 등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입폭이 크게 침체되었음

2) 한국산

- 오사카항의 페리호(팬스타호)의 월,수,금 운항으로 인해 한국산의 대부분이 이전에는 시모노세키항 등으로만 수입되던 것이 오사카항의 이용이 대폭 급증하고 있으며, 오사카세관의 넙치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양식생산기술, 신선도유지기술 및 물류시스템의 정비로 활어(살아 있는 것)의 수입이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이중에서도 오사카항의 수입은 2003년부터 급격히 신장되어 2005년에는 전국의 15%를 차지했음